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76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자율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어문 규범에 적합하지 않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 2. 주요내용

- 자율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가”를 “학교에”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10조제1항).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학교가”를 “학교에”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자율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를 “다문화 특색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 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u>학교가</u> 다문화 특색을 살린 <u>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u>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자율학교는 지역 여건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u></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u>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 ----- <u>학교에</u> ----- ----- <u>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p> <p>&lt;삭 제&gt;</p> <p>② -----<u>다문화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예비학교는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이하 “정책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3.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